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12년 6월 pp.91~116
한국세무학회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중심으로 -

이성엽* · 전규안** · 김완희***

<요 약>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 잉여금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피투자회사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 그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는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하는 방안이 평가에 따른 손익을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에서 모두 제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계산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차입금을 조달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법인세법 개정시 즉시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주제어> 배당금 익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평가

* 다산회계법인 이사, leesy@dasancpa.com, 02-2192-6651, 제1저자

**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02-820-0581, 교신저자

***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wanhikim@gachon.ac.kr, 031-750-5209,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12년 1월

1차수정일 2012년 3월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피투자회사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 그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는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 잉여금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입장에 있다(김진수 2004).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 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배당세액공제 제도나 익금불산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인의 경우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할 때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2012년 6월 현재 그 계산은 차입금의 이자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을 받는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지분율을 고려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 3-17의 3...1에서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강제평가기업과 임의평가기업의 경우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¹⁾

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분모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금액을 적용하는 반면에 분자에는 취득원가를 적용함으로써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관련한 각종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의 형평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의 계산방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동 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의의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제Ⅳ장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1) 편의상 외부감사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의무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거나 또는 지분법 등을 적용해야 하는 기업을 강제평가기업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을 임의평가기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II.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및 관련 법률 규정

1.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의의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과세된 소득 중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법인실재설과 독립과세론에 논거를 두고 있는데,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라는 것과 법인의 소득은 법인 자체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독자적인 담세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진수 2004). 따라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자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배당은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인 주주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전혀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법인이 도관(*conduit*)이라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모든 소득은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법인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견해가 달라진다(김진수 2004).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법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기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로 인해 기업형태 선택의 왜곡, 과도한 타인자본조달, 배당정책의 왜곡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말 법인세법에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하는 규정이 최초로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말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기관투자자와 지주회사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것이 일반법인까지 확대 적용되었다(성용운·이병산 2007).

2. 외국의 배당금 과세제도

다른 나라의 세법에도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 주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일정 부분 익금불산입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영국의 경우 면제투자소득으로 정의하여 전액 공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배당금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익금불산입하여 소득공제를 하는데 지급받은 배당금 중에서 단기 소유에 따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하는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또한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이러한 일본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법인 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제도를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국의 법인 주주의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비교 ^{주1)}

구 분	법인이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미 국	* 지분율에 따라 일정부분 익금불산입하여 소득공제 - 20% 미만 소유 : 수취배당금의 70% - 20%~80% 소유 : 수취배당금의 80% - 80% 초과 : 수취배당금의 100%
영 국	* 면제투자소득으로 정의하여 전액 공제 - 면제투자소득 = 수취배당금 + 배당가산액
독 일	* 배당금 전액 소득 공제(법인세법 제8b조 제1항)
일 본	- 연결법인 주식취득과 관련된 배당은 전액 익금불산입 - 수취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기초금액 = 수취배당금 - 단기소유분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위의 기초금액 - 차입금이자) × 80% (25% 이상 지분율을 소유한 특정 주식의 경우 : 100%)

주1) 김진수(2004)와 장근호(2009), 김유찬·이유향(2009), 국중호(2009)를 수정하여 인용함

3.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가. 지주회사²⁾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며, 또한 동 배당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다음 ①과 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③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³⁾

- ①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4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액 전액

2) 여기에서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의미한다.

3) 여기서 ③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해당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한 경우 관련 이자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관련 배당금도 익금불산입이 된다면 이중적인 혜택이 되므로(즉,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될 이자비용이 없음)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내국법인이 위의 ①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80%
- ③ 지주회사가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경우(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이자는 제외)에는 동 차입금의 이자에 위 ①, ②의 적용을 받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위 ①, ②에 의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금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100\% \text{ 또는 } 80\%) \\ \text{익금불산입 차감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text{자산총액}} \end{aligned}$$

한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 총액으로 한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거나 법인세가 비과세·면제·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반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한다. 또한 동 배당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다음 ①과 ②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③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①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를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 100% 출자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전액
- ② 내국법인이 위의 ①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30%
- ③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손금불산입된 차입금 이자는 제외)에는 동 차입금의 이자에 위 ①, ②의 적용을 받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위 ①, ②에 의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를 수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금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50\%, 30\% \text{ 또는 } 100\%) \\ \text{익금불산입 차감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text{자산총액}} \end{aligned}$$

한편, 지주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 및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거나 법인세가 비과세·면제·감면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연결집단에 속한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연결집단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연결집단 전체를 기준으로 출자비율⁴⁾을 적용하여 익금불산입 금액을 산정한다(김영환 외 2011). 즉, 법인세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의한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를 제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이 계산된 익금불산입액은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에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불산입한다.

$$\begin{aligned} \text{익금불산입액} &= \text{수입배당금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50\%, 30\% \text{ 또는 } 100\%, 80\%) \\ \text{익금불산입 차감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text{자산총액}} \\ \text{연결법인별 익금불산입 차감액} &= \text{최종 익금불산입액} \times \frac{\text{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text{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 합계액}} \end{aligned}$$

4) 수입배당금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라.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에 자산총액에서 주식의 장부가액에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7항 및 제17조의 3 제5항에서는 자산총액 및 주식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3-17의 3...1에서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도 자산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단순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계산한다. 결국, 현재 세법은 분자인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이용하는 반면에 분모는 세무상가액이 아닌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를 이용하고 있어 분자와 분모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Ⅲ.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입법상의 문제점

1. 피투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대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할 때 분모의 자산총액은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을 의미하고, 분자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분모와 분자의 대응되는 금액이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일 수 있다. 즉,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 즉 사실상의 취득원가가 아닌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에서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자산총액은 이러한 평가에 따른 손익이 이익잉여금이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같은 자본항목으로 반영되어 자산총액을 변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총액에 대응되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이므로 지급이자와 관련한 익금불산입 제외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 분모와 분자간에 부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례

를 통하여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 례

가.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과세

[기본가정]

- ① 회사는 일반법인이며,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19%이다.
- ②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1년간 보유하고 있으며, 피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30원이다.
- ③ 회사의 지급이자 50원은 전액 차입금에 대한 것이다.
- ④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취득원가)은 340원이다.
- ⑤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회사의 당기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매도가능증권	340	차입금	300
기타자산	1,200	자본금	1,150
		이익잉여금	90
합계	1,540	합계	1,540

(1)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단위 : 원)

구분	금액
배당금	30
익금불산입률	30%
익금불산입 해당액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31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5.69

<표 2>에서 보듯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3.31원인데 이는 총자산의 적수에서 매도가능증

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340원÷1,540원)이므로 여기에 익금불산입률 30%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비중은 6.6%이고, 이에 지급이자 총액을 곱한 금액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2) 유가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한편 위 기본가정에서 제시된 재무상태표에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평가이익 80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당기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단위 : 원)			
매도가능증권	420	차입금	300
기타자산	1,200	자본금	1,15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80
		이익잉여금	90
합계	1,620	합계	1,620

또한 이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유가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단위 : 원)	
구분	금액
배당금	30
익금불산입률	30%
익금불산입 해당액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15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5.85

<표 3>에서 보듯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3.15원인데 이는 총자산의 적수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340원÷1,620원)이므로 여기에 익금불산입률 30%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비중은 6.3%이고, 이에 지급이자 총액을 곱한 금액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즉, 이를 다시 표현하면 약 22%(=340원÷1,540원)×30%×50원(지급이자)≒3.31이 된다.

(3)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한편 위 기본가정에서 제시된 재무상태표에서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평가손실 60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당기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단위 : 원)			
매도가능증권	280	차입금	300
기타자산	1,200	자본금	1,15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60)
		이익잉여금	90
합계	1,480	합계	1,480

이 경우에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유가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단위 : 원)	
구분	금액
배당금	30
익금불산입률	30%
익금불산입 해당액	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45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5.55

<표 4>에서 보듯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3.45원인데 이는 총자산의 적수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340원÷1,480원)이므로 여기에 익금불산입률 30%를 고려하면 최종적인 비중은 6.9%이고 이에 지급이자 총액을 곱한 금액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각 경우의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피투자회사 주식의 평가액에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최종적인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례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유가증권평가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단위 : 원)

구 분	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액	340	420	280
세무상 장부가액(A)	340	340	340
자산총액(B)	1,540	1,620	1,480
비율(A ÷ B)	22%	21%	2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31	3.15	3.45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5.69	5.85	5.55

나. 지분법 평가에 따른 과세

지분법 평가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분법이익, 지분법손실, 그리고 지분법자본변동 금액에 따라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달라진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과 달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여 장기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무상 장부가액과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평가액간의 차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1)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앞의 기본가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율이 51%라고 가정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50%가 되고 이 때 지분법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배 당 금	30
익금불산입률	50%
익금불산입 해당액	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52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9.48

<표 6>에서 보듯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5.52원인데 이는 총자산의 적수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이므로 여기에 익금불산입률 50%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비중은 11%이고, 이에 지급이자 총액을 곱한 금액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누적적인 거액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한편 위의 사례에서 지분법 평가에 의해 누적적으로 지분법이익이 200원, 지분법자본변동이 100원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 당기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40	차 입 금	300
기 타 자 산	1,200	자 본 금	1,150
		지 분 법 자 본 변 동	100
		이 익 잉 여 금	290
합 계	1,840	합 계	1,840

이 경우에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누적적인 거액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배당금	30
익금불산입률	50%
익금불산입 해당액	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62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10.38

<표 7>에서 보듯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4.62원인데 이는 총자산의 적수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적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5%이므로 여기에 익금불산입률 50%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비중은 9.25%이고, 이에 지급이자 총액을 곱한 금액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각 경우의 비교

<표 8>에서 보듯이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평가액에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최종적인 배당금 익

금불산입액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지분법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단위 : 원)

구 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누적적인 거액의 지분법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주식평가액	340	640
세무상 장부가액(A)	340	340
자산총액(B)	1,540	1,840
비율(A÷B)	22%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52	4.62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9.48	10.38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간주원가 적용 여부에 따른 과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서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와 간주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각각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최초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세무상 장부가액과 일치하겠지만, 간주원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누적적인 평가차액으로 인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⁶⁾

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에 따른 과세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경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결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차액으로 인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익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마. 실제기업의 사례

여기서는 지주회사인 P기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회사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계산한다.⁷⁾

6) 간주원가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가액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 중 하나를 의미한다.

7) P기업의 사례는 자회사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이 발생한 사례로서 이로 인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증가

먼저 2008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각각 <표 9> 및 <표 10>과 같다.⁸⁾ <표 9>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의 익금불산입액은 9,872백만원이고, 제외한 경우의 익금불산입액은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8,495백만원으로서 그 차이는 1,377백만원이다. 즉, P기업은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1,377백만원만큼 커진다.

<표 9>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2008년)

(단위 : 백만원)

배당기업	가	나	다	라	합 계
배당금액	1,100	5,000	300	4,900	11,300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①	1,100	5,000	300	4,900	11,300
자회사의 주식취득원가	12,300	40,000	100	56,700	109,100
취득원가 적수②	4,489,500	14,600,000	36,500	20,695,500	39,821,500
지주회사의 자산 총계	382,000	(자회사 평가이익을 포함한 금액임)			
자산 적수③	139,430,000				
지주회사의 이자비용④	5,000				
익금불산입 제외 이자비용⑤	161	524	1	742	1,428
익금불산입 배당금①-⑤	939	4,476	299	4,158	9,872
자회사의 평가이익	187,500				
이익잉여금	166,800				
자본잉여금	12,300				
기타포괄손익	4,100				
이연법인세부채	4,300				

하는 사례이다. 만약 자회사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 8)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P기업의 사례에서 2009년에는 기업 ‘라’가 배당을 하지 않았고, 기업 ‘마’가 배당을 했으며, 2010년에는 기업 ‘라’와 ‘마’가 모두 배당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에는 기업 ‘가’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 있으며, 2010년에는 기업 ‘다’에 추가로 출자를 하였다.

<표 10>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을 제외한 경우(2008년)

(단위 : 백만원)

배당기업	가	나	다	라	합 계
배당금액	1,100	5,000	300	4,900	11,300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①	1,100	5,000	300	4,900	11,300
자회사의 주식취득원가	12,300	40,000	100	56,700	109,100
취득원가 적수②	4,489,500	14,600,000	36,500	20,695,500	39,821,500
지주회사의 자산 총계	194,500	(자회사 평가이익을 제외한 금액임)			
자산 적수③	70,992,500				
지주회사의 이자비용④	5,000				
익금불산입 제외 이자비용⑤	316	1,028	3	1,458	2,805
익금불산입 배당금①-⑤	714	3,744	297	3,119	8,495
자회사의 평가이익	187,500				
이익잉여금	166,800				
자본잉여금	12,300				
기타포괄손익	4,100				
이연법인세부채	4,300				

2009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각각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표 11>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의 익금불산입액은 22,026백만원이고, 제외한 경우의 익금불산입액은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21,249백만원으로서 그 차이는 777백만원이다. 즉, P기업은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에 배당금 익금불산액이 777백만원만큼 커진다.

<표 11>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2009년)

(단위 : 백만원)

배당기업	가	나	다	라	합 계
배당금액	2,400	5,000	300	15,100	22,800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①	2,400	5,000	300	15,100	22,800
자회사의 주식취득원가	17,000	40,000	100	14,700	71,800

〈표 11〉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2009년) (계속)

(단위 : 백만원)

배당기업	가	나	다	라	합 계
취득원가 적수②	6,205,000	14,600,000	36,500	5,365,500	26,207,000
지주회사의 자산 총계	445,000	(자회사 평가이익을 포함한 금액임)			
자산 적수③	162,425,000				
지주회사의 이자비용④	4,800				
익금불산입 제외 이자비용⑤	183	431	1	159	774
익금불산입 배당금①-⑤	2,217	4,569	299	14,941	22,026
자회사의 평가이익	222,800				
이익잉여금	203,000				
자본잉여금	15,400				
기타포괄손익	300				
이연법인세부채	4,100				

〈표 12〉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을 제외한 경우(2009년)

(단위 : 백만원)

배당기업	가	나	다	라	합 계
배당금액	2,400	5,000	300	15,100	22,800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①	2,400	5,000	300	15,100	22,800
자회사의 주식취득원가	17,000	40,000	100	14,700	71,800
취득원가 적수②	6,205,000	14,600,000	36,500	5,365,500	26,207,000
지주회사의 자산 총계	222,200	(자회사 평가이익을 제외한 금액임)			
자산 적수③	81,103,000				
지주회사의 이자비용④	4,800				
익금불산입 제외 이자비용⑤	367	864	2	318	1,551
익금불산입 배당금①-⑤	2,033	4,136	298	14,782	21,249
자회사의 평가이익	222,800				
이익잉여금	203,000				
자본잉여금	15,400				
기타포괄손익	300				
이연법인세부채	4,100				

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나누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각각 <표 13> 및 <표 14>와 같다. <표 13>에서 보는 것처럼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의 익금불산입액은 11,961백만원이고, 제외한 경우의 익금불산입액은 <표 14>에서 보는 것처럼 11,078백만원으로서 그 차이는 883백만원이다. 즉, P기업은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883백만원만큼 커진다.

<표 13>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을 포함한 경우(2010년)

(단위 : 백만원)

배당기업	가	나	다	합 계
배당금액	5,900	4,600	2,000	12,500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①	5,900	4,600	2,000	12,500
자회사의 주식취득원가	17,000	40,000	600	57,600
취득원가 적수②	6,205,000	14,600,000	219,000	
지주회사의 자산 총계	652,600	(자회사 평가이익을 포함한 금액임)		
자산 적수③	238,199,000			
지주회사의 이자비용④	6,100			
익금불산입 제외 이자비용⑤	159	374	6	539
익금불산입 배당금①-⑤	5,741	4,226	1,994	11,961
자회사의 평가이익	405,500			
이익잉여금	268,000			
자본잉여금	54,500			
기타포괄손익	54,000			
이연법인세부채	29,000			

〈표 14〉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을 제외한 경우(2010년)

(단위 : 백만원)

배당기업	가	나	다	합 계
배당금액	5,900	4,600	2,000	12,500
익금불산입률	100%	100%	100%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금①	5,900	4,600	2,000	12,500
자회사의 주식취득원가	17,000	40,000	600	57,600
취득원가 적수②	6,205,000	14,600,000	219,000	
지주회사의 자산 총계	247,100	(자회사 평가이익을 제외한 금액임)		
자산 적수③	90,191,500			
지주회사의 이자비용④	6,100			
익금불산입 제외 이자비용⑤	420	987	15	1,422
익금불산입 배당금①-⑤	5,480	3,613	1,985	11,078
자회사의 평가이익	405,500			
이익잉여금	268,000			
자본잉여금	54,500			
기타포괄손익	54,000			
이연법인세부채	29,000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상황별 P기업의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비교하면 <표 15>와 같다. P기업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평가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의 경우 평가이익의 포함 여부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이는 1,377백만원이고, 2009년의 경우는 777백만원며, 2010년의 경우는 883백만원이다. 이를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2008년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평가손익에 따른 법인세 효과는 344백만원으로서 P기업은 자회사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이 자산총액에 포함됨으로써 344백만원의 법인세가 감소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171백만원, 2010년에는 194백만원의 법인세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법인세 감소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⁹⁾ 앞으로 이러한 평가이익이 누적될수록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은 감소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P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은 계속 감소할 것이다.

9) P기업의 사례는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만약 자회사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표 15〉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평가이익의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2008년~201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가이익 포함	평가이익 제외	평가이익 포함	평가이익 제외	평가이익 포함	평가이익 제외
주식취득원가	109,100	109,100	71,800	71,800	87,600	87,600
자산총액	382,000	194,500	445,000	222,200	652,600	247,100
배당금	11,300	11,300	22,800	22,800	12,500	12,50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428	2,805	774	1,551	539	1,422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9,872	8,495	22,026	21,249	11,961	11,078
법인세 효과	(2,443)	(2,099)	(4,802)	(4,631)	(2,607)	(2,413)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이	1,377		777		883	
법인세효과 차이	344		171		194	

주1) 주식취득원가는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원가임.

주2) 법인세 효과는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 각 연도별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임.

3.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입법상의 문제점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세 부담의 공평이라는 조세정의의 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는 ‘조세부담공평주의의 원칙’으로 집약할 수 있다(노명근 1993).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투자회사 주식의 평가 여부에 따라서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서로 다르게 계산되는 상황은 능력원칙에 기초한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을 일정 부분 훼손하고 있다. 즉,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 달리 말하면 모든 의미 있는 측면에서 똑같은 사람이라면 조세상으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이준구 2002).

특히 지급이자자가 있고 피투자회사의 주식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누적적인 평가이익이 더 큰 경우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더 커져서 법인세부담이 감소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기업에서 이러한 임의평가증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달라짐으로써 과세의 형평이 무너질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평가의 방향, 즉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의 발생에 따라서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달라져서 법인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여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각 자회사의 평가액에 따라서 배

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달라진다. 가령 모든 자회사에서 누적적인 평가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배당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자회사를 제외한 모든 자회사에서 누적적인 평가손실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세부담도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IV. 개선 방안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하는 방안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분에서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자회사 평가와 관련한 손익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평가손익 반영 후 금액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서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회사 평가와 관련한 손익을 포함하는 방안이다.¹⁰⁾¹¹⁾

1.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하는 방안은 달리 말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총액을 피투자회사와 관련한 평가손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평가손익이 자산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최소한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평가에 따른 손익의 영향을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거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모든 회사의 평가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0)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한다.

$$\text{익금불산입 차감액} =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times \text{익금불산입률}}{\text{자산총액}}$$

위 식의 분자에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에는 이미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첫 번째 방안은 분모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방안(즉, 분모를 수정하는 방안)이다. 반면에 두 번째 방안은 분자의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하는 방안(즉, 분자를 수정하는 방안)이다.

1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안은 주가가액의 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외에도 익금불산입차감액 계산시 분모의 자산총액을 세무상자산으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세무상자산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며, 세무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가가액 이외의 부분에 의해서 익금불산입차감액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가가액의 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평가손익 반영 후 금액으로 적용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평가손익 반영 후 금액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달리 말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평가손익을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하여 자산총액에 포함된 평가손익으로 인한 영향을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에도 반영하는 것이다. 즉, 분모에 피투자회사의 주식과 관련한 평가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자에도 이러한 평가손익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모든 회사의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위 두 가지 방안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차이 및 이에 따른 법인세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다.

[가정]

- ① 회사는 일반법인이며,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1%이며, 이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50%이다.
- ②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피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은 1,000백만원이다.
- ③ 회사의 지급이자 700백만원은 전액 차입금에 대한 것이다.
- ④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취득원가)은 7,000백만원이다.
- ⑤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경우 회사의 당기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투 자 주 식	7,000	차 입 금	10,000
기 타 자 산	14,000	자 본 금	8,000
		이 익 잉 여 금	3,000
합 계	21,000	합 계	21,000

- ⑥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이 1,000백만원이 발생한 경우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8,000백만원, 자산 총계는 22,000백만원이고, 평가손실이 1,000이 발생한 경우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6,000백만원, 자산 총계는 20,000백만원이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현행 법인세법 규정과 위 두 가지 방안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이에 따른 법인세 효과를 계산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현행 법인세법 규정과 개선방안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법인세법		평가손익 제외 (첫 번째 방안)		평가손익 포함 (두 번째 방안)	
	평가이익 발생	평가손실 발생	평가이익 발생	평가손실 발생	평가이익 발생	평가손실 발생
주식취득원가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주식장부가액	8,000	6,000	8,000	6,000	8,000	6,000
자산총액	22,000	20,000	21,000	21,000	22,000	20,000
배당금 총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익금불산입대상 배당금	500	500	500	500	500	500
지급이자	700	700	700	700	700	70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11	123	117	117	127	105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389	377	383	383	373	395
법인세 효과	(86)	(83)	(84)	(84)	(82)	(87)

주1) 평가손익 제외는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자회사 평가와 관련한 손익을 제외한 경우(즉, 첫 번째 방안)를 의미하며, 평가손익 포함은 분모와 분자에 모두 자회사 평가와 관련한 손익을 포함한 경우(즉, 두 번째 방안)를 의미함.

주2) 주식취득원가 및 주식장부가액은 각각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원가 및 장부가액임.

주3) 법인세 효과는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한 것임.

<표 16>에서 보듯이 현행 법인세법 규정 및 평가손익을 포함하는 방안에 의할 경우 평가의 방향에 따라서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법인세 효과가 달라지는 반면에 평가손익을 제외하는 방안(첫 번째 방안)에 의할 경우 평가의 방향과 관계없이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및 법인세 효과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첫 번째 방안에 의하면 평가손익의 발생여부가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더 나아가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3. 두 방안의 비교

채무상대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하는 첫 번째 방안은 평가에 따른 손익이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에서 모두 제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계산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차입금을 조달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피투자회사의 주식과 관련 평가손익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표에서 유보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는데 실무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¹²⁾ 그리고 익금불산입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산출세액에 따른 순환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는 데 왜냐하면 자산총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평가손익 반영 후 금액으로 적용하는 두 번째 방안은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조정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세 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평가에 따른 금액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피투자회사 주식과 자산총액의 비율이 1보다 적기 때문에 이 방안을 적용하면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더 적어져서, 최종적인 익금불산입 금액이 더 커진다. 즉, 평가가 없는 경우에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2와 3이라 하면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비율이 2/3가 되는데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100%인 상황에서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이 1만큼 발생한 경우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의 비율은 3/4이 되지만 평가손실이 1만큼 발생하면 그 비율은 1/2이 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더 적어지는 것이다. 즉, 평가의 방향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방안은 현재의 제도와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과세의 형평에 있어서 수평적 공평은 담세능력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 지급받은 배당금, 지급이자, 차입금, 자산총계 및 동 주식의 보유기간이 동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금불산입되는 배당금은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 규정은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을 적용함으로써 동 주식의 평가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리 계산되어 익금불산입되는 배당금이 달라지고, 최종적으로는 법인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보다는 평가이익이 있는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금액이 더 적고 누적적인 평가이익이 더 큰 경우에 그 금액이 더 적어져서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1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나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한 연결집단의 경우에도 관련 평가손익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표에서 유보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역시 이러한 방안을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커져서 법인세부담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최근에 기업들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한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금과 같은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이러한 경향과 맞물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피투자회사의 장부가액을 평가손익 반영 후 금액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방안에 의하는 경우에 평가손익의 발생여부가 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더 나아가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과세라는 수평적 공평성의 조세원칙을 더욱 공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져서 법인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법인세법 개정 시 즉시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국중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 김영환 외. 2011. 『연결법인세의 실무』. 삼일인포마인.
- 김유찬 · 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 김진수. 2004.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노명근. 1993. 『세법해석의 이론과 실제』. 정문출판.
- 성용운 · 이병산. 2007.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기업의 배당에 미친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 8권 제4호 : 9-37.
- 이준구. 2002. 『재정학』. 다산출판사.
- 이창희. 2011. 『세법강의』. 박영사.
- 장근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 한국조세연구원.

A Study on Improvement of Non-inclusion of Received Dividend Amount in Gross Income in Coporation Tax Law

- Focusing on Non-inclusion of Interest Paid in Deductible Expenses -

Lee, Sung Youb* · Jeon, Kyu An** · Kim, Wan Hee***

〈Abstract〉

Taxation of dividend income would be double-taxation because the source of dividend, retained earning, is already taxed by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Korean Tax Code is, to a degree, in a position to resolve the double-taxation. Regulation on Corporate Income Tax Law applies non-inclusion of dividend income in gross income as a resolution for preventing double-taxation if the stockholder is a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the taxation issue of fluctuation in non-inclusion of dividend income amount in according to the valuation of investee's stock like fair value and equity method and to propose remedies to improve this proble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s; An alternative to eliminate the valuation income or loss of investee's stock in total assets of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s more desirable because it is tax-neutral for the valuation income and loss as well as there is no tax-difference between valuating corporation and non-valuating corporation in investee's stock.

It can be expected that this article can contribute as pointing out the taxation issue of fluctuation in non-inclusion of dividend income amount in according to the valuation of investee's stock and proposing remedies to improve this problem.

〈Key words〉 Non-inclusion of Received Dividend Amount in Gross Income, non-inclusion of interest paid in deductible expenses, Stock Valuation

* Partner, Dasan Accounting Corpor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Gachon University